



2019년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주)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주)오토기기
Autonomous
Your safety - our mission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가. 사업목적

- 미세먼지 대기 환경오염 심각성에 의한 민원발생등으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20년부터 현행보다 평균 30%이상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적용 예정**
- 노후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 하여 강화된 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나. 사업기간

- 전체사업기간 : '19년~'22년 (4년간)
- 당해('19년) 추경 완료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 예정 : **7월초~중 2차공고 예정**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다. 주요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

※ 경기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실시예정 (환경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00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따른 중·소기업(1~5종대기사업장)

※ 배출량 기준으로 1~5종 사업장 지원 (도장부스는 5종에 해당)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업장 지원 가능 (동일 방지시설이 아닌 경우)

※ 도장부스는 배기 장치만 해당 :

구비서류상 도면 및 재질이 일치 해야하며 장치를 제외한

성과와 연관이 없는 토목 또는 덕트등의 비용은 설비보다 초과하면 심의에서 탈락.

Ex : 장치80 덕트10 토목10 (승인) / 장치30 덕트50 토목20 (불승인)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다.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 2.7억원 이하, 공동방지시설 3.6억원 이하
 - 보조금 분담 비율: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추가,신규: X)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동일한 방지시설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설
 -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사물인터넷(IoT)

- 대기배출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계측기 사양 (본문 참조) : 차압계 · 압력계 , 온도계

□ 사물인터넷 설치 조건

- 2020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IoT 부착 의미 법제화 예정 (하반기 입법예고)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IoT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음
- 방지시설 가동유무 확인 차원이며 IoT 기기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설치 시기 :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동시에 완료 (진행)

- 2019년 계측기 설치 :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측정만)
- 2020년 관제시스템 구축 이후 통신, 자료수집 시스템 설치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라. 사업진행절차



※보조금은 공사완료후 심의통과후 지급 (사업 전,후 자가측정기록부 등 제출)

※접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파주)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라. 사업진행절차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공사비용 청구 및 지급

- 준공완료 후 선정기업이(사업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공사대금은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지급**
- 사업 전·후 방지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 결과 제출

□ 사후관리

-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도 개선 모니터링
-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를 3년간 모니터링(환경부, 지자체)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마. 사업예산 : 가내시(안)

(단위:천원)

시군명	예산액	시군명	예산액	비 고
수원시	900,000	고양시	1,080,000	
용인시	2,340,000	남양주시	1,620,000	
화성시	8,460,000	파주시	3,600,000	
안양시	540,000	양주시	3,600,000	
김포시	7,020,000	포천시	4,500,000	
광주시	3,240,000	동두천시	360,000	
군포시	720,000	가평군	270,000	
의왕시	270,000	연천군	360,000	
여주시	1,260,000			
성남시	1,440,000	오산시	360,000	
부천시	2,520,000	하남시	180,000	
안산시	5,220,000	아산시	2,880,000	
평택시	변경전 60억 -> 변경후 약 400억		180,000	
시흥시	2,880,000	과천시	135,000	
광명시	180,000	의정부시	270,000	
이천시	1,440,000	구리시	270,000	
합 계 : 61,335,000천원 (소급분 제외)				
환경기술지원센터 : 40,140,000천원 (소급분 제외)				

- ❖ 추경 국·도비 확정 후 7월 중 사업 추진 계획
- ❖ 사업내용 및 환경부 지침 등이 변경 중으로 2차 공고 내용 반드시 확인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바. 유의사항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제**

제 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 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중앙 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 사업체의 자부담비용을 리베이트로 대납 또는페이백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 설명회 내용 요약

바. 유의사항 : **벌칙**

제 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② 제 26조의6 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 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② 제 26조의6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 ③ 제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횡령 편취,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